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169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552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41697 판결

전문

원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내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면서 매장연출업무[SD(Shop Design)업무, 이하 'SD업무'], 즉 C의 제품을 판매하는 각종 매장에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매장을 연출디자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1. 15.경 퇴사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C와 피고 간의 도급계약 체결

(1) C와 피고는 2007. 2. 20.경 C가 피고에게 C가 관리하는 매장의 SD업무의 수행을 위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2. 29.까지 매년 1년 단위로 SD업무에 관하여 종전과 유사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2. 29.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연도별 계약은 '20○○년도 도급계약'으로 칭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C가 도급업무내역서에서 정한 도급업무의 수행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도급대가의 지급1) ① 피고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이하 '도급대가')는 첨부1 도급업무내역서에 정하기로 한다. 도급대가는 첨부1 도급업무내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2 도급대가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피고는 도급대가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C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내역서에 따르면, ① 2007~2008년도에는 도급업무의 정의 및 범위를 '전매채널(C 전문점, E, 시스템전문점) 및 혼매채널(F, G, 백화점, 할인점, 기타 행사장 등)의 매장연출 관련 전시(display)업무'로 정하고 있고, 도급업무의 상세내역을 '오픈점 및 이전/확장점 연출, 시즌별 매장연출, 매장조성 컨설팅 및 수정보완, 판촉행사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2009년도~2013년도에는 "도급범위는 C의 관리매장(전문점, E, 양판점, 할인점)의 오픈연출과 기존점 연출에 한한다. 오픈점은 신규매장 오픈과 리뉴얼 오픈점을 통상 오픈연출이라 하고, ... (중략) ..., 기존점 연출은 C 전매와 혼매의 모든 기존 매장에서 발생하는 연출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 연출은 오픈점 연출을 우선한 다음 계약금액 내에서 계획에 의한 실시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③ 2014년, 2015년도에는 위 도급범위에 ‘고객만족 증대를 위한 방문활동’이 추가되었으며, ④ 2016년도에는 위 도급범위에 ‘C 요청에 의한 매장평가’가 추가되었다.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C와 주식회사 E(이하, 합하여 ‘C 등’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SD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총 인건비(= 투입인원 수 × 근로시간 × 시간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에게 매월 현금으로 분할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하여 2016. 2. 29.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본인”은 “피고”를, “회사”는 “원고”를 지칭한다).

- 주계약 : 도급계약(첨부 : 업무내역서-오픈점 연출, 기존점 연출, 기존점 방문활동, C 요청에 의한 매장평가)2) ○ 보험가입금액 : 3억 3,300만 원
- 보증내용 : 계약보증금
- 보험기간 :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제4조(사전구상)

① 본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해당 채무액을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없이 본인에게 사전상환을 위한 채권행사(이하, 사전구상권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라. 현장POP업무 대행의 위탁 및 대금 결제방식의 변경 등

(1) C는 2010년 7월 이전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부서에서 현장POP3) 발주를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현장POP 제작을 의뢰하면, 피고가 매장 실사 후 직접 또는 하청업체를 통하여 현장POP 광고물을 제작하였고, C는 피고가 현장POP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자재비용 등을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광고물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직접 하청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2) C는 각 지역이나 영업소별로 현장POP를 개별적으로 발주제작하게 되어 예산이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잡무가 늘어나며, 현장POP가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7월경 피고에게 현장POP에 관한 발주 및 제작, 공급 등 업무 일체(이하 ‘현장POP업무’)를 위탁하고, C 내 디자인팀에서 관련 예산을 총괄관리하면서 피고에게 현장POP 대금을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년 7월 이후부터 C 등의 현장POP업무를 일괄 대행하면서 매월 C 등으로부터 현장POP 대금을 지급받고 하청업체 등에 제작비용을 지급하였다.

(3) C는 현장POP업무를 피고에게 일괄 위탁하면서 POP 제작에 필요한 자재별 단가표를 마련하였고, 단가표의 정함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C 측 담당 실무자가 피고와 협의하여 견적금액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단가표 금액이나 사전에 협의된 견적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C 등에게 현장POP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금액 중에는 피고가 하청업체에 실제로 지급할 비용 외에도 피고의 디자인비, 자재비, 기타 잡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2016년 8월경 진행된 C의 내부감사에서 피고의 현장POP 대금 정산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후 C는 피고에게 현장POP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보험금 청구 및 가압류 등

(1) C는 2017. 12. 2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주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3억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46,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지급을 보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4조의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1. 31.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0796)을 받았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에 의해 위 결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계약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금 상당액의 사전상환을 위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피고가 주계약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등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현장POP의 구입제작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만을 C 등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현장POP 구입제작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C 등에게 청구하면서 마치 실제 구입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처럼 C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400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5. 9. D 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관련 사건에서 C 등은 현장POP업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SD업무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과 별도로 업무수행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현장PO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즉 하청업체 제작대금, 소품 구입비, 자재비 등 ‘실비’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C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현장POP에 관한 기획, 발주,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SD업무에 온전히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 4. 16. C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전구상권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1) 2009년, 2010년 각 도급계약서에는 제3조의 내용이 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도급대가 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 ○ POP(Point Of Purchase): ‘판매시점 광고물’이라는 뜻으로 유통업체가 매장 내 진열한 상품설명이나 각종 행사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련의 홍보 광고물을 지칭한다.

○ 현장POP: 특정 매장의 연출을 위하여 매장의 크기, 규격 등 매장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별 발주제작되는 POP

○ 양산POP: 매장의 크기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대량으로 제작하는 광고물로서 현장POP와 대비되는 개념이다.